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위헌”… 벼랑 끝 소상공인들

현재 주휴수당 위헌 ‘심리 진행중’
내일 전원회의 열고 논의 본격화
동결·차등적용 vs 인상 줄다리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위한 논의를 오는 19일 전원회의를 통해 본격 시작할 예정인데 가운데 최저임금 논쟁에 더욱 불이 붙고 있다. 사용자 측은 초반부터 ‘최저임금 동결’ 주장과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등을 외치고 있는 반면 노동계 등에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할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업계에서 제기한 주휴수당 관련 위헌소송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임금’을 놓고 한국 사회가 당분간 뜨겁게 달아오를 조짐이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다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한 회원은 올해 1월 초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가 ‘2019헌마15’인 이 소송은 현재 심리가 진행중으로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돼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선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란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법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곧 ‘주휴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왼쪽 5번째부터)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총로구지회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권순중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월 급여	기본급 (145만원) + 법정 주휴수당 (29만원)
월 시간	소정근로시간 (173.81시간) + 법정 주휴수당 (34.76시간)
■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일액 : 주 40시간 근무 시, 한달 174만원 (최저임금 8,350원 × 173.81시간 + 8,350원 × 주휴 34.76시간)	
■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 145만원 (8,350원 × 173.81시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 아님 <small>자료/ 고용노동부</small>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 수’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했다면 사용자가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줘야하는데 그 대신 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일반 월급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하루치 임금, 즉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하루에 5시간(일주일 25시간) 또는 8시간(일주일 40시간)씩 일했다면 각각 5시간,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 “주휴수당은 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5년간 지속돼온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새롭게 부과되는 게 아니다”면서 “만약 ‘나누는 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주휴수당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노동자 임금은 16.7%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휴수당이나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이나 모두 사용자측인 소상공인 등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게 문제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급등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 시행령까지 고치면서 주휴수당을 시간 계산에 포함시키도록 한 터라 사

용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반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최저임금법)과는 다른 법에 의해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으로, 둘을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부의 논리대로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다면 관련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또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로투스 안철환 변호사는 “현재가 선고기일을 언제로 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 “만약 현재가 관련 소송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 사안이 추가 법 개정으로 혼란을 줄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규모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요원?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효성 제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즉각 수용하고, 정부에 공식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도 그동안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법제화를 주장해왔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3개월로 각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지금 최저임금으로 빚어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소상공인들의 이같은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참여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은 이와 별도로 이날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열고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와 고임금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를 봤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與도 野도 동결론?... 발목잡힌 최저임금 ‘1만원’

▶▶ 1면 ‘총선 의식?... 여권...’서 계속

야권서 지속적으로 동결 주장 나와

그뿐만이. 참여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은 지난 4월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간담회 때 문 대통령에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와 관련해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가 노동자 소득을 인상시켜주는 반면,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최저임금 동결 당론 채택’ 시 노동계 핵심세력인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반발을 우려해 최정호 위원장 건의에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여권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된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과 관련해 불편한 입장을 피력했던 바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정부의) 목표는 깨진 게 사실”이라며 “(하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인상 기초)은 조금 어렵더라도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월25일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만남 때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라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권 일부에 한정된 게 아니다. 야권에서는 지속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올해 1분기 ‘중소기업 해외 투자액’이 35억 달러를 넘어서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게 우리경제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로 탈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고, 근로시간 대책 없이 줄이고, 세금인상에 사방에 규제까지 가로막혔으니 기업으로서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 역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2020년 1만원’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근본적으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전면 수정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이준호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장(왼쪽 세번째)이 관계자들과 함께 ‘K-SEMS 해외 실증사업 협력 업무협약(MOU)’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도미니카에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 수출

한국전력공사 K-SEMS 업무협약

제어기기 제조업체 제이앤디전자와 협력해 PUCMM 대학 및 한인이 운영하는 현지 전기서비스·건설업체인 ESD에 K-SEMS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가 도미니카공화국에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K-SEMS)을 수출했다.

PUCMM 대학과 ESD가 자체 예산으로 건물에 발광다이오드(LED)·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효율화설비를 구축하면, 한전은 K-SEMS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제이앤디전자는 계측장비 납품과 시공을, 공장용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공급하는 바스코ICT는 K-SEMS 구축을 담당한다.

한전은 지난 14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 있는 PUCMM 대학에서 PUCMM 대학, ESD, 제이앤디전자와 ‘K-SEMS 해외 실증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K-SEMS를 도입함으로써 PUCMM 대학과 ESD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도미니카 국가 전력 부하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K-SEMS는 전기, 가스, 열 등 고객의 다양한 에너지 사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제어함으로써,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통해 효율향상과 비용 절감이 가능한 에너지 통합제어기술이다.

이번 MOU에 따라 한전은 국내 전자